

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(민원)처리에 대한 불복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등 쟁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·간편하게 처리토록 하여
 - 시민고충민원의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
 -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목적,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범위, 위원회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조 내지 제3조)
 - 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명문화함 (안 제4조)
 - 위원회의 구성, 위원자격요건, 회의개최 등 조직 운영, 위원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 내지 제13조, 제16조)
 - 사무직원수 및 직무등 사무기구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4조)
 -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 - 위원회 운영상황공표, 관련기관협의회 개최, 위원실비보상, 경비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7조 내지 제21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홍완식)

- 본 조례안은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민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32조는 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비롯한 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바 법적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 -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본바 전국의 1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·운영중이며,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장의 의지 및 운영형태에 따라 운영실적과 성과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- ※ 조례제정 단체 : 서울양천구, 인천 중구, 대전 대덕구, 안양시, 원주시, 영월군, 청주시, 익산시, 정읍시, 목포시, 나주시, 완도군 등
-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 쟁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통하여 신속 간편하게 처리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절약도록 하며
 - 특히 법과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결 하면서 기존의 민원처리 형태 개선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.
 - 본 제도의 성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안 제14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질의) 제천시 위원회중에 혹시 판사, 검사, 변호사인분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가요?(김꽃임 의원)
- 답변) 인사위원회에 한분,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사님이 한분계십니다.

- 질의) 위원회 자격요건에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려지 않아도 우리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직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. (조덕희 의원)
- 답변) 이 규정은 우리 법률에 4년으로 하되 연임할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규정을 넘어서 다른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.
- 질의)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나 시정조치를 했을 때 19조에 보면 적극 이행토록 노력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하다하다 대화를 하다가 해결을 불려고 하다가 안 돼서 넘어온 사항이란 말이에요. 넘어왔을 때 과연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지? (김기상 의원)
- 답변) 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보고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